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경의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관리·감독권한 신설〉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095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성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해경의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관리·감독권한 신설	3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진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4. 3.
3. 회 부 일 : 2026. 4.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육상에서 발생한 수산물가공 잔재물 또는 준설토사 등의 폐기물을 선박을 이용해 해상에 투기하는 업종으로 그 활동의 전과정이 해상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

그러나 해당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등록, 처리실적 관리, 영업 취소 등의 인허가 사무 및 출입·검사 등 관리감독 권한은 해양수산 부장관의 권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장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출입·검사를 실시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현장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출입·검사 및 행정 처분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해양폐기물 불법 투기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 단속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 심사 시 선박·시설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실지 확인’ 업무와 적정 처리 여부를 감시하는 ‘출입·검사’ 업무는 함정·인력 등 현장 인프라를 보유한 해양경찰청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의 현장 집행 역량을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관련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인허가 단계부터 사후 지도·감독까지 행정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해양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개정 등).

1. 해경의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관리·감독권한 신설(안 제19조 등)

☐ 개정안은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등록 및 신고 접수 권한(안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과 사후 관리·감독 권한(안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4조제1항, 제31조) 등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제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해양수산부장관에게</u>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해양수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① ----- ----- ----- ----- ----- ----- ----- <u>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u> -----.

현행	개정안
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는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u>해양수산부장관에게</u>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2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u>해양수산부장관</u>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휴업·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① ----- ----- ----- -----<u>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u>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u>----- ----- ----- ----- ----- ----- -----.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현행	개정안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해양수산부장관에게</u>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u>해양수산부장관</u>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② (생략) 제31조(청문) <u>해양수산부장관</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 <u>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u>-----.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u>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u>은----- ----- ----- ----- ----- -----.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청문) <u>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u>은----- ----- -----. 1. · 2.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육상 또는 해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오염된 적물 등을 선박과 전용 설비를 이용하여 해상에서 수거(해양폐기물수거업)·정화(해양오염된적물정화업)하거나 배출(폐기물해양배출업)하는 업종을 의미하는바¹⁾, 현행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록(제19조), 처리실적 관리(제21조), 등록취소·영업정지(제24조) 및 출입 검사권(제32조) 등의 관리·감독 권한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음²⁾.

해양폐기물관리업은 폐기물의 배출, 수거 및 정화 등 활동의 대부분이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 해양경찰청은 전국적으로 배치된 경비·방제함정 등 현장 대응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경찰청에게도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관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된적물 관리법」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제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폐기물을 해상에 배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폐기물을 해상에 배출하는 사업
2. **해양폐기물수거업**: 부유폐기물·침적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3. **해양오염된적물정화업**: 해양오염된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된적물을 정화하는 사업

2) 해당 업무는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된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1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의 접수
1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인계·인수서의 접수
18.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19.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접수
20.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2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과 출입 확인·점검·검사

리·감독권을 부여하여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재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에 대한 등록 심사 및 선박·해양시설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출입검사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현장집행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으므로³⁾,

개정안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 심사 시 선박·설비의 적격여부 확인이나 사후 불법 배출 등을 감시하는 업무를 함정과 현장 인력을 보유한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면 해양폐기물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3)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삭제 <2019. 12. 3.>

2. 해양오염방제업 :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상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3. 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4. 삭제 <2019. 12. 3.>

5. 삭제 <2019. 12. 3.>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③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2. 제70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을 하는 자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과 같이 관리·감독 권한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가질 경우, 민간 업체가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 어느 한쪽에만 등록 및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양쪽 기관 모두에게 등록 및 신고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므로, 이중으로 감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피규제자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거나 관리·감독의 통일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참고로, 과거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일종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사후지도·감독 및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한 바 있음.⁴⁾⁵⁾

그러나 2018년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2020년 「해양폐기물 및

4)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 2007.1.19.제정)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 : 해양투기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해상에 투기하는 사업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②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일반직 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한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해양오염방제업·유창정소업을 영위하는 자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위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44호, 2008.1.11. 제정) 제94조(권한의 위임)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
3.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인계·인수서의 수리
4. 법 제73조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명령
5.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9. 법 제120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5) 참고 3 「해양경찰청의 해양폐기물배출업 관련 지도·감독 실적」 참조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 등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통합적 수행을 위해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비롯한 해양폐기물 관리업 전체의 관리 권한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음.

< 해양폐기물관리업 관리·감독 권한 변천 연혁 >

소관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개정 시점		'08.1.20~	'14.11.19~	'17.7.26~	'18.5.1~	'20.12.4~
해양폐기물 수거업	관리 전반	해양수산부				
	출입검사	해양수산부				
해양오염 퇴적물정화업	관리 전반	해양수산부				
	출입검사	해양수산부				
폐기물 해양배출업	관리 전반	해양수산부 (시행령에서 해경에 위임)	해양수산부			
	출입검사	해양경찰청	국민안전처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 폐기물해양배출업 출입검사·보고 권한은 정부조직 개편('17.2.26.) 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건이 누락됨에 따라 '18.5.1.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이후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유하게 됨
자료: 해양수산부

현행법과 「해양환경관리법」 분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해양폐기물관리업 감독의 효율성 제고라는 기대효과보다 업무 중복에 따른 행정적 갈등·혼선 또는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더 클 수도 있으므로,

입법에 앞서 양 기관간 명확한 업무범위 설정 및 유기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사전 의견 조율이 선행된 후, 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에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 심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불법 해양폐기물 투기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나, 현행법상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인

출입검사⁶⁾ 조항에는 해양수산부장관만이 그 주체로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양경찰청은 등록 심사 및 취소 등 서류상 관리·감독 권한만을 가지게 되므로,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에게도 출입검사권을 부여하고,⁷⁾ 현행법상 해양폐기물 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활용⁸⁾ 및 관련 업무의 위임·위탁 규정⁹⁾ 등에도 해양경찰청을 주체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예방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현장 집행 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하게 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양 기관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해양폐기물관리업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일관된 관리·감독이 어려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2조(출입·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폐기물관리업자, 전문기관 및 폐기물 해양배출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폐기물의 수거·보관·처리 현황을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7)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출입·검사권의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도록 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057)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임.

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0조(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또한 과거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부터 폐기물해양배출업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한 바 있으나, 2020년 분법 이래 3개 업종(폐기물해양배출업·해양폐기물수거업·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통합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점, 배출업 규모는 점차 축소¹⁰⁾ 중인 반면 주류인 수거·정화업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전문성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양경찰청에 관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할 실익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¹¹⁾

해양경찰청은 ‘폐기물해양배출업’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업종으로, 서류 중심의 행정 관리보다는 함정 등 현장 세력을 갖춘 해경의 현장 단속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는 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하위 법령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수거업·정화업, 해양경찰청은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분담하여 관리하면 이중규제 우려는 해소될 수 있는 점 등에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2

10) (업체수) '11. 18개소 → '25. 6개소 / 전체 해양폐기물관리업체의 11%('26.4. 기준)
(배출량) '11. 397만㎥ → '25. 8.4만㎥

11)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발의하려는 의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반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지만, 재정소요와 관련이 없는 의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추계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2021. p.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폐기물해양배출업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다.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라.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마.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 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바. 폐기물의 수집·운반·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사.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해양폐기물수거업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다. 별표 4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라.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자본금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다. 별표 4 제3호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라.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에 필요한 시설·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및 설계 계산서

바.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시설·장치의 처리 공정도

사.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처리방법, 처리공정 및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서

아. 자본금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해양환경관리업 시행규칙」

제55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①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3.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2

해양폐기물관리업 관련 통계

□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 현황('26.4월 말 기준)

(단위 : 개소, %)

구분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군산	목포	포항	대산	계	비중
해양폐기물수거업	1	3	6	8	-	3	2	4	7	34	61.8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	-	1	9	-	1	-	1	3	15	27.3
폐기물해양배출업	2	-	1	1	2	-	-	-	-	6	10.9
계	3	3	8	18	2	4	2	5	10	55	100

□ 해양폐기물관리업 관련 인·허가 처리 실적('21~'25)

< 업종별 처리 건수 >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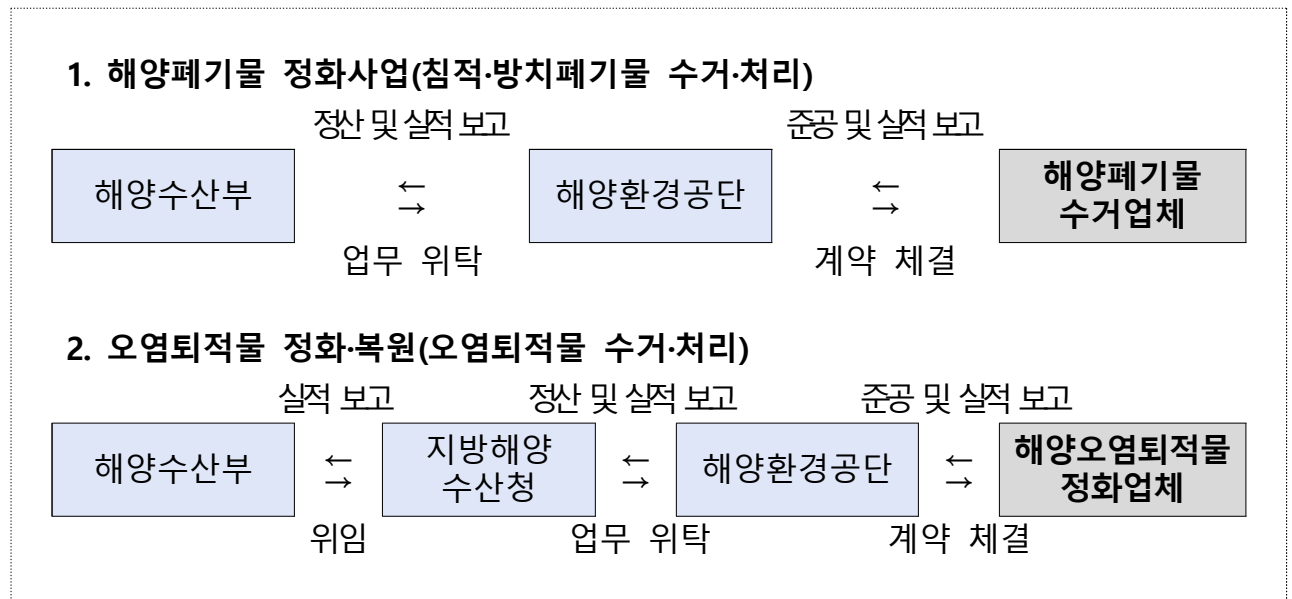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비중
해양폐기물수거업	5	4	0	2	2	13	3.7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14	21	63	66	60	224	63.6
폐기물해양배출업	9	10	36	37	23	115	32.7
계	28	35	99	105	85	352	100

< 인·허가 종류별 비중 >

(단위 : 건,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비중
신규 등록	3	5	6	7	8	29	8.1
변경(권한 승계 포함)	17	25	76	89	73	280	78
반납, 취소 등	8	5	17	9	11	50	13.9
계	28	35	99	105	92	359	100

□ 해양폐기물관리업 관련 사업체제도



□ 폐기물 해양배출량 및 배출업체 통계('06~'25)

(단위 : 만 m³배출량, 개소업체)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해수부 이관)	'15
배출량	881	745	617	479	448	397	229	116	49	26
배출 업체	19	19	19	19	19	18	12	10	9	9
위탁 업체	4,188	3,626	2,949	2,892	2,810	1,011	995	813	579	464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배출량	3.5	2.9	2.7	5.9	11.6	16.6	11.7	7.1	8.7	8.4
배출 업체	9	11	11	10	10	7	7	7	5	6
위탁 업체	121	123	129	121	121	120	124	89	94	86

참고 3

해양경찰청의 해양폐기물배출업 관련 점검·단속 실적

□ 폐기물해양배출업 관련 점검 실적('09~'13)

구 분	폐기물운반선 점검(척)			업 체 점 검(회)			
	계	추적감시	출입검사	계	위 탁 업 체		폐기물해양 배출업체
					신규·변경	출입검사	
2009년	317	268	49	1,780	229	1,467	84
2010년	91	53	38	1,567	205	1,307	55
2011년	87	51	36	1,636	161	1,426	49
2012년	30	2	28	1,224	100	1,091	33
2013년	14	0	14	2,045	1,057	966	22

□ 폐기물해양배출업체 단속 실적('09~'13)

* () 과태료와 병과 처분

구 분	계	위 반 내 용(건)				조 치 결 과(건)		
		배출해역 위반	신고의무 불이행	해양배출 방법위반	기 타 (행정질서 위반 등)	형사입건	과태료	행정처분
2009년	11	3	-	-	8	7	4	3(3)
2010년	8	2	-	-	6	3	3	7(5)
2011년	4	-	-	-	4	-	4	2(2)
2012년	2	1	-	-	1	-	1	2(1)
2013년	18	1	-	-	-	-	-	1(-)

□ 위탁업체 단속 실적('09~'13)

* () 과태료와 병과 처분

구 분	계	위 반 내 용(건)			조 치 결 과(건)			행정 지도
		해양배출 처리기준 위반		기 타 (행정질서 위반 등)	형사입건	과태료	해양배출 불 허	
		신규·변경	출입검사					
2009년	184	-	122	62	5	57	122	75
2010년	55	36	19	-	-	35	20	81
2011년	44	-	11	33	-	38	12(6)	13
2012년	43	-	39	4	2	38	16(13)	3
2013년	15	-	14	1	-	14	7(6)	1

□ 해양배출 폐기물 성분검사 실적('09~'13)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분석 시료(점)	2,064	786	503	412	235	128
배출기준 초과 시료(점)	213	137	26	23	21	6